



국가인권위원회공보

국가인권위원회

2019년 2월 15일

제17권 제1호

알 릫

-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(진정인, 피해자, 피진정인)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, 소속기관,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,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.
-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humanrights.go.kr>)에 게재되고 있으므로,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목 차 -

공 지 사 항

1	인사발령 등	1
2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	10
3	진정·상담·민원·안내 접수 및 처리 현황	14
4	진정사건 처리 현황	16

법령·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

- 1** 2018. 10. 22.자 결정 【UN 「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」 대한민국 제17·18·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】 …… 25
- 위원회는 UN 「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」 대한민국 제17·18·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과 현재의 중요한 인권상황 등 최종견해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독립보고서를 제출
- 2** 2018. 11. 26.자 결정 【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】 …… 63
- 【1】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, 형사상 형벌이 배제되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(현행 14세)을 하향하는 「형법 일부개정법률안」과 형법 범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(측법소년) 연령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·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(현행 15년)을 상향하는 내용의 「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유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소년의 사회복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,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
- 【2】 법무부장관에게, 현재 소년사법체계에서 아동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,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해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,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
- 3** 2018. 12. 14.자 결정 【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】 …… 81
-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·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,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,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 신설 및 미디어다양성 조사항목 확대를 권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는 성평등특별위원회 설치를 권고

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

- 1** 2018. 8. 9.자 결정 17진정1082500 【체포 및 조사과정의 과도한 수갑 사용 등】 95
- 경찰서장에게,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수갑 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피진정인 1, 2, 3 등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, 피진정인 4, 5에게 서면 주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
- 2** 2018. 8. 9.자 결정 18진정0440100 【진술서 수정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】 107
- 경찰서장에게,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,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서 작성 시 진술자의 증감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- 3** 2018. 8. 9.자 결정 18진정0399600 【미란다원칙 미고지 및 부당한 수갑 사용 등】 118
- 경찰서장에게,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「경찰관직무집행법」 제10조의2 및 「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」 제50조 등에 따라 경찰 수갑 등 장구 사용 시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- 4** 2018. 8. 9.자 결정 17진정0352800, 17진정0800600 병합 【경찰의 미란다원칙 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한 인권침해】 131
- 지방경찰청장에게,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「헌법」 제12조 제5항,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5, 「범죄수사규칙」 제98조 및 「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」 제53조 제2항에 따라 현행법 체포 시 준수하여야 할 적법절차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경비 및 수사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- 5** 2018. 8. 9.자 결정 17진정1087400 【경찰의 부당수사 및 피의사실 공표 등에 의한 인권침해】 145
- 경찰서장에게,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,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피의사실 공표의 객관성 확보 등의 준수 의무에 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6 2018. 9. 18.자 결정 17진정0372200 【검찰의 부당한 압수물 폐기】 …… 158

- 【1】** ○○지방검찰청장과 △△지방검찰청 △△지청장에게, 피진정인 1, 2에 대하여 서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
- 【2】** □□지방검찰청장에게, 확정 판결 전에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7 2018. 9. 18.자 결정 18진정0209100 【검찰조사 시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】 …… 166

○○○○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,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, ○○○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,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 등 조사 시 수갑 등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8 2018. 11. 9.자 결정 18진정0450200 【헌병대 구치소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】 …… 173

제○해병여단장에게, 진정요지 나.항과 같이 미결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부대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차별행위 조사결정

1 2018. 11. 1.자 결정 17진정0317000 【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차별】 …… 181

○○○○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○○○○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○○○○의 소속 근로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「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」 등에 따라 적정 도급비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과, ○○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자가 차량 출입 및 개인사물함과 같은 비품 제공 등에 있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

2 2018. 11. 21.자 결정 18진정0160000 【특정질환자(HIV감염인)에 대한 차별적 처우】 …… 196

○○대학교병원장에게, 피진정인에게, 향후 HIV 감염인 진료과정 중에 차별적 처우가

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종합건강검진센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차별예방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3 2018. 11. 21.자 결정 17진정1211800 【**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 제외 차별**】 **202**

【1】 ○○○○교육감에게,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

【2】 ○○○ 장관에게,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

4 2018. 11. 21.자 결정 18진정0185300, 18진정0180900, 18진정0197400 병합 【**임신,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**】 **217**

기간제교원 근무활동평가 시 임신, 출산휴가 등 임신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, ○○○○○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

5 2018. 12. 28.자 결정 17진정0943300, 17진정1118600 병합 【**임신,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**】 **237**

습관성 유산 등의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, ○○○○장애인종합복지관장과 ○○○○ 도지사에게 임신,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

6 2018. 12. 28.자 결정 15진정0166200 【**소속 노동조합에 따른 근로조건 등 차별**】 **248**

【1】 피진정인에게, 진정요지 다.항 중 ‘잔업 및 특근 부여’와 ‘무분규 타결금 등 지급’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

【2】 ○○○○주식회사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사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피진정인과 진정인 및 관계 기관인 ○○고용노동청과 ○○○도가 각각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표명

7	2018. 12. 28.자 결정 16진정1003600 【나이를 이유로 한 부서장 보직 해임】	270
	○○○○○○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, 향후 부서장 보직 등 인사 관리에 있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삼거나 나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	
8	2018. 12. 28.자 결정 17진정1183200 【병원의 미화노동자에 대한 연령차별】	279
	○○○○대학교병원장에게, 청소위탁용역업체 선정 시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, 청소위탁용역업체인 ○○○○○(주) 대표가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결원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채용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	
9	2018. 12. 28.자 결정 18진정0830800 【대학교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】	287
	○○대학교 총장에게, 중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, 위 취지에 맞게 ○○○대학교의 「교원인사규정」 제6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	

인권도서관 신착자료

1	국가인권위원회 간행본	297
2	국내서 단행본	299
3	연속간행물 구독 목록(2019년)	301